

한국건축정책학회지 심사규정

2014년 00월 00일 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논문 투고규정에 의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절차, 심사기간, 논문편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사위원 구성)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가부를 결정한다.

제 3조 (심사 평가항목)

심사위원은 다음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한다.

1. 연구목적의 적절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연구내용의 논리성
4. 연구결과의 정책적 기여도

제 4조 (심사 절차 및 기간)

1. 논문심사는 관련 전공분야의 심사위원 3인이 수행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4.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 가', '수정 게재', '수정 재심', '게재 불가' 네 가지 중 하나로 한다. 논문 심사위원이 수정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때에는 충분한 심사의견을 기술하여야 한다.
5. 논문게재는 3인의 '게재 가(수정게재 포함)' 판정을 원칙으로 하되 3인의 최종판정 중 2인의 '게재 가' 판정 때에도 게재한다. 2인의 '게재 가', 1인의 '게재 불가'의 판정 시에는 1인의 '게재 불가'의견을 다른 2인의 심사위원에게 제시해야 하며 특별한 언급이 없을 시 게재한다. 이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도 2인의 '게재 가'심사의견을 보내 논문이 게재됨을 통보한다. 단, 투고된 논문이 심사결과 '게재 가'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할 수 있다.
6. 2인 이상의 '게재 불가'판정된 논문은 게재될 수 없으며,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통보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재투고를 금한다.
7. '수정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심사위원은 재심 의뢰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게재 가'로 처리한다. 단,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은 재심 의뢰 후 10일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 의견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단, 심사위원이 심사기일 연기 요청을 해올 경우 재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
8. 수정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120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논문심사를 종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9.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위촉할 때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10.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위촉하며, 심사의견만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1. 투고자가 판정에 불복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는 이의제기에 따른 특별소청위원회(편집위원장, 관련전공 편집위원)를 구성하고 30일 내에 투고자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한다.

제 5조 (논문심사)

1.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결과를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의 네 가지 중 하나로 판정한다.
2. 심사위원은 “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 판정 시 수정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게재불가 판정 시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3명의 심사위원에 의한 개별 심사결과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종합하여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의 네 가지 중 하나로 판정한다.

<심사기준>

심사결과 조합			종합 심사결과
○	○	○	현상태 게재
○	○	△	수정후 게재
○	○	X	수정후 게재
○	△	△	수정후 재심
△	△	△	수정후 재심
○	△	X	수정후 재심
△	△	X	수정후 재심
○	X	X	게재불가
△	X	X	게재불가
X	X	X	게재불가

○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X 게재불가

4. 종합 심사결과가 “게재” 또는 “수정후 게재”인 경우에는 논문게재가 확정된다.
5. 종합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정 논문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그 사유의 합당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추후 수정논문의 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
6. 심사위원은 5항의 수정논문을 평가하여 당초 지적한 사항에 대한 수정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7. 심사위원은 최대 3회(초심+재심 2회)의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재심결과가 다시 “수정후 재심”일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8.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하며, 그 액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6조 (이의제기 및 중재)

1.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이나 수정요구 사항 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이 투고자의 이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투고자와 심사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판정을 내린다. 단, 심사위원과 투고자간 모든 의견교환은 반드시 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익명의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의견교환을 통해 견해차이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최종 판정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투고자와 심사 위원은 이 최종 판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7조 (논문게재 순서)

각 학회지의 논문게재 순서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논문심사결과에 의해 논문게재가 확정된 순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그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제 8조 (별쇄본의 제공)

논문 투고자에게는 게재된 학회지의 별쇄본 20부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가 인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투고자가 인쇄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9조 (논문의 철회 등)

1. 논문 내용에 심대한 오류가 있거나 연구를 제한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 고의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게재불허, 논문삭제 등을 할 수 있다.
2.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 받은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중지하고, 15일 이내에 이 사실을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제 10조 (저작권)

1.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단, 제 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2.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11조 (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